

紛爭方法 選擇過程의 標本

— 椅子의 實用新案權侵害訴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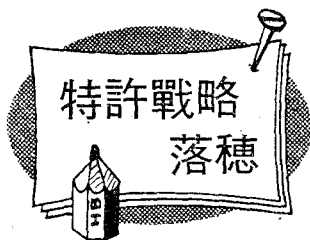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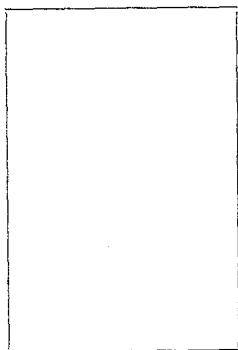
特許權의 權利侵害紛爭 虛實의 實例이다.

日本의 네코스(株)는 1960년에 4千個의 椅子를 製作販賣했다. 그러나 이 事實이 알려지자 岡村製作所等 3社가 連名으로 權利侵害訴訟을 提起하였다. 內容인즉 提訴 3社의 實用新案權侵害이므로 의자의 販賣 禁止, 損害賠償, 新聞에의 謝罪廣告 掲載要求이다.

그러나 被訴側인 네코스는 權利內容이 構造的으로 差異가 있다고 判斷하고 安心하였다. 이에 對해 提訴側은 구조나 效果의 技術的 範圍가 자기네의 것과 동일하다고 主張하였다.

한편 네코스社는 登錄權利內容을 檢討해 본바 出願公告되었을 때 同一發明이 이미 출원되었다고 異議申請이 제기되었던 事實을 確認하였다. 또한 原告側의 1人이 바로 그 이의신청자였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取下하는 條件으로 그 실용신안의 共同出願人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더우기 그 이의신청의 證據가 된 公知文獻으로 그가 출원했다가 拒絕査定된 것까지 判明되었다.

따라서 이의신청증거로 提示한 앤드카드(株)의 출원이 公知문헌에 의해 거절사정된 것처럼 岡村製作所의 실용신안도 公知문헌에 따라 거절사정되어야 하는 瑕疵出願으로 疑心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네코스社는 모든 事實을 勘案하여 3個 條項을 들어 無効主張과 權利濫用을 例示하였다.



그러나 法院判決은 네코스가 주장하는 기술적범위에 대하여는 岡村 등의 실용신안권리를 認定하였다. 또한 公知문헌에 따른 등록사정처분에 하자를 明白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岡村 등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들이 요구하는 의자판매가액의 3%를 支拂하게끔 네코스에 判示했다. 이로써 네코스는 岡村등에 538,800圓을 지불하게 되었다. 다만 新聞에의 사회광고청구에는 業務上 信用이害를 보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부분만은 제소측의 주장을 不認했다.

이들의 爭點은 特許法上 當然한 業報이며 兩社는 大戰後 1年差異를 두고 設立된 企業들이지만 單1年을 먼저 설립한 先發企業이 그만큼 工

業所有權에 關心을 먼저 갖게 되었다는 것과 또한 岡村이 戰前 海軍 技術者를 採用하고 있었다는 점이 勝敗를 가리게 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紛爭方法의 善好다. 첫째는 네코스는 岡村 등의 公業소유권이 공고되었을 때 이의신청으로 對抗不可能일때는 재빨리 無効審判을 청구했어야 할 것이고 또한 公知技術의 증거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한다. 둘째는 특히나 실용신안 이외에 意匠에도 關心을 갖어야 한다는 점이다. 意匠權을 갖고 있었으면 특히나 의장권의 實施料를 지불하지 않고 相對의 權利를 使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는 製品을 開發하기전에 먼저 先行技術이나 권리를 調査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코스의 경우 國內에서 發刊되는 公知문헌인 실용신안의 出願公告公報나 關係資料(韓國의 경우는 實用新案登錄目錄도 包含)등을 備置했거나 조사했으면 손쉽게 발견되어 過誤는 犯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國際市場을 상대로 生産을 展開하는 企業國家야 말로 선행기술의 권리 조사가 時急하며 가장 중요한 企業要素이다. 內需만을 상대로 하던 過去와는 다르다. 어느 開發途上國이던 겪어야 하는 주먹구구식이며 模倣—邊倒時代의 企業觀念으로 國際市場에의 進出이나 對應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環境이 되어버렸다.